



제 4 1 7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체 육 시 설 의 설 치 ·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검 토 보 고

< 체 육 시 설 업 자 의 휴 · 폐 업 시 이 용 자 에 대 한 통 지 의 무 화 >
■ 김 영 배 의 원 대 표 발 의 (의 안 번 호 제 2201550 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전 완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요지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2024. 7. 10.
3. 회 부 일: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이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3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는 <u>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 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40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u>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u>

	<u>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 하지 아니한 자</u>
5.·6. (생략)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폐업) 통보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체육시설업자가 30일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¹⁾

이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는 체육시설의 휴·폐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신규 계약이나 계약의 갱신, 이용 계획의 설정 등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음. 또한, 장기간의 선불이용료를 지불하는 체력단련장의 경우 장기간 등록 이후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 대응이 곤란한데, 관련 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바도 있음.²⁾

1)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2) “내일부터 운영 중단” 대구서 대형 헬스장 돌연 폐업, 연합뉴스, 2023.11.10.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시설의 휴·폐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첫째, 휴·폐업 통지 대상으로 체육시설업장에 등록된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용료 환불 등과 무관한 1회성 이용자에게도 통지의무가 발생하여 체육시설업자의 관리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이용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휴업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르면 1일 휴업인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자는 통지를 해야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바, ‘1주일 이상의 휴업’ 등 이용자의 이용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휴업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학원법」, 「의료법」 등 유사 법령에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³⁾,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월 이상 휴업일 경우 통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임.

셋째,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체육시설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체육시설 내·외부에 공지 등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⁴⁾.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⁵⁾,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에 해당 사항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⁶⁾

넷째,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휴·폐업 통보 의무는 신고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는바,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도 시·도지사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 및 회원·일반 이용자에 대한 휴·폐업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